

“회원을 위한, 튼튼한 수의사회”



대한수의사회

수신 수신처 참조
(참조)

제목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 및 「동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 관련 의견 조희

1.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-429호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-430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과 관련합니다.

2.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다양한 동물학대사태 발생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동물생산업의 허가제 전환, 동물관련 산업의 영업제도 정비 등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에 따라 하위 법의 일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

3.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 및 「동법 시행규칙」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, 의견 있으신 지부 및 산하단체에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우리회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불임 1.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(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17-429호)
2.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 개정안
3.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4.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(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17-430호)
5.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개정안
6.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. 끝.

대한수의사회



수신처 각 시·도지부장, 각 산하단체장

담당자 유진 과장 김동완 팀장 오근호 전무 전무 전결 우연철

협조자

시행 대수 2017 - 423 (2017. 11. 17) 접수

우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8-6 수의과학회관 5층 / <http://www.kvma.or.kr>

전화 070-4907-0042 전송 031-702-1020 / eugene@kvma.or.kr /